

발간등록번호

11-1280000-0000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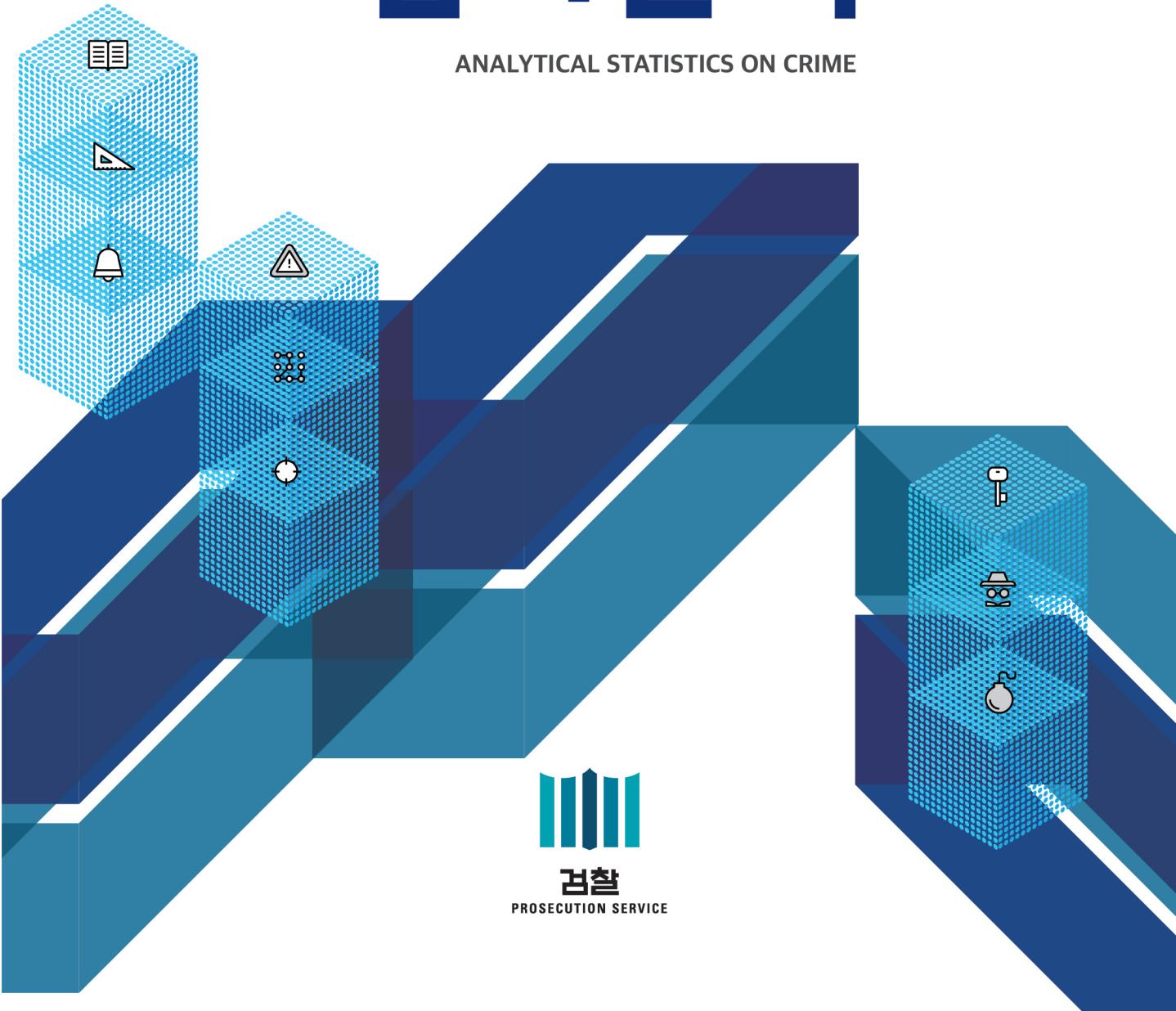
통권 제 151호

ISSN 1226-7716

2018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2018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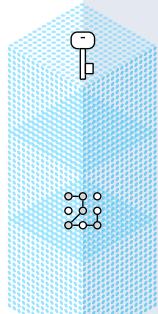


대검찰청
(www.spo.go.kr)

1. 본 통계는 2017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통계의 단위는 ‘건’과 ‘명(인원)’이다.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기준과 집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따라서 ‘범죄분석’에서의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 발생통계원표는 사건 단위로 작성한다.
- ▶ 2017년 ‘발생건수’는 각급 수사기관이 범죄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2017.1.1. ~ 2017.12.31.까지 작성·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이와 같이 집계 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년 발생건수에는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포함된다.
- ▶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2017.1.1. ~ 2017.12.31.까지 형사입건된 사건 중 2018.4.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발생통계원표의 수를 2017년 발생건수로 집계하였다.
- ▶ 군사법원 관할의 범죄는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형법 위반 사건이 각급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형법



2018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위반 사례(군형법 위반 중 ‘추행’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를 제외하고 2017년 발생건수를 집계하였다. 다만, 2015년 이전의 『범죄분석』에서는 군형법 위반 중 ‘추행’과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발생건수에 포함하여 집계함에 따라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한다.

2) 검거통계원표

- ▶ 검거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한다. 또한, 피의자가 여러 명인 공범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검거되면 검거통계원표를 작성하며, 이후 다른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검거통계원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는다.
- ▶ 검거통계원표는 사건 단위로 작성한다.
- ▶ 검거통계원표는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는 당해 연도 검거건수에 포함된다.
- ▶ 2017년 ‘검거건수’는 2017.1.1. ~ 2017.12.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검거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2017.1.1. ~ 2017.12.31.까지 입건하였거나 송치한 사건 중 2018.4.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검거통계원표의 수를 2017년 검거건수로 집계하였다.

3) 피의자통계원표

-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단,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 2017년 검거인원 및 성, 연령, 전과 등 피의자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단위 : 명)는 2017.1.1. ~ 2017.12.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를

일러두기

피의자동계원표 수로 집계하였다. 즉, 전체 피의자동계원표 중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와 범인은 제외하였다.

- ▶ 범죄자 처분결과 및 범죄자 유형별 통계(단위 : 명)는 2017.1.1. ~ 2017.12.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동계원표 중 2018.7.31.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동계원표 수로 집계하였다.

※ 2014년 이전 『범죄분석』에서는 검거인원 집계 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의 피의자동계원표는 포함시키고, 피의자의 성별이 미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2014년 이전 『범죄분석』과 2015년 이후 『범죄분석』의 검거인원수를 비교할 때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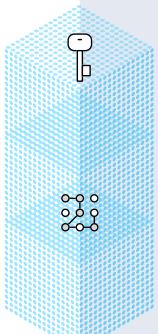
4. 통계표에 사용된 범죄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범죄는 크게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하였다.

2) 형법범죄의 분류체계

- ▶ 기본 방향은 「형법」각 장의 분류를 따르고,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죄에 포함하여 형법의 해당 장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특별법의 조항 중 형법에 해당하는 장이 없는 경우는 특별법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거나[예: 특가법(도주차량)] '기타 특별법'으로 분류하였다.
-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정(변경, 신설 등)된 법령 등을 반영하였으며, 「2018 범죄분석」의 형법범죄는 중분류(8개), 소분류(48개), 세분류(99개)로 분류하였다.

대분류	형법 중분류	형법 소분류	형법 세분류
형법/특별법	8개	48개	99개



2018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 「2018 범죄분석」 분류체계

① 형법범죄에 포함된 특별법범죄

형법범죄에 포함된 특별법범죄	포함연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200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9년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5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등)	2015년
한국마사회법(도박개장 등)	2015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2016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법률	2016년

② 특별법범죄가 포함된 소분류 및 세분류 사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
재산범죄	배임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배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수재등, 알선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증재등)
강력범죄 (폭력)	폭력행위등 (손괴·강요· 주거침입)	폭력행위등 (손괴·강요·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손괴·강요·주거침입)
	폭력행위등 (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 (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단체등의 구성·활동)

▶ 상세한 형법 분류체계의 내용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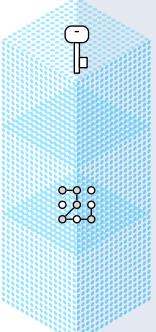
일러두기

3) 특별법범죄 분류체계

- ▶ 기본 방향은 특별법범죄 중 발생빈도가 많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위반한 범죄 114개를 선정하였으며,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였다.
※ 2015년 특별법범죄 114개를 선정한 이후, 자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법률이 제·개정되어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률명을 현행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법범죄 분류체계의 제·개정(변경, 신설 등)된 법령 등을 반영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4) 교통범죄의 분류

- ▶ 교통범죄는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로 구분되며, '교통사고 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사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기타 교통범죄'는 「형법」교통방해의 죄,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등에 의하여 죄명이 신설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범죄에 한정된 죄명을 교통사고 범죄로, 교통사고 범죄 이외 또는 특별법범죄의 특징 상 단일 죄명에 의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범죄 이외가 모두 포함될 경우는 기타 교통범죄로 분류하였다.



2018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검거건수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 또는 공범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검거한 사건 수. 기술적으로는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된 검거통계원표의 수. 2017년 검거건수는 2017.1.1. ~ 2017.12.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검거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함.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2017.1.1. ~ 2017.12.31.까지 입건하였거나 송치한 사건 중 2018.4.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검거통계원표의 수를 2017년 검거건수로 집계



검거인원

2017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피의자의 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사건을 이송받아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한 검찰과 검찰에 송치할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실제 검거인원과 피의자통계원표의 수는 상이함. 2017년 검거인원은 2017.1.1. ~ 2017.12.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가 검거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임.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못한 경우)의 피의자통계원표는 제외하고 검거인원을 집계함. 범인의 수는 별도로 집계하여 제시

검찰 '지휘관할' 관련 통계 검찰이 직접 직수·인지한 사건과 각 지방검찰청 지휘관할구역(검찰청 관할구역 내의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통계)의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을 같이 제시함. 검찰 지휘관할구역의 발생건수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분류한 범죄발생지역 통계와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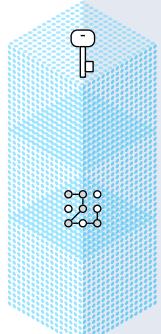
검찰 '직수·인지' 관련 통계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직수한 사건의 통계로서, 검찰청별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통계

고령범죄자

만 65세 이상의 범죄자

용어해설

공무원범죄자	범죄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 국회, 법원 및 기타로 구분. 각 지방의 의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음. 공무원범죄자 중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의미
공범관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전부 파악하여 범행가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범수	검거 여부와 관계없는 실제 공범의 숫자임. 단독은 공범이 없는 경우이며, 2명은 주피의자와 공범이 1명인 경우, 3명 이상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구속·불구속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
금전소비용도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
발생건수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형사입건한 사건 수. 구체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전산입력 후 승인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 2017년 발생건수는 2017.1.1. ~ 2017.12.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2017.1.1. ~ 2017.12.31.까지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18.4.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발생통계원표의 수를 2017년 발생건수로 집계
발생비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인구는 행정안전부 2017년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임



2018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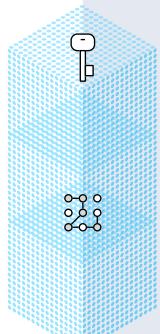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범죄발생시간	24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통계를 제시. 다만, 범죄발생시간은 필수 입력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원표입력시스템에 ‘미상’ 항목이 없기 때문에 미상을 0시로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자정’과 ‘미상’이 구분되지 않아 0시로 입력된 사건은 모두 ‘미상’으로 처리함에 따라 24시에 발생한 사건이 과소 집계되어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함
범죄발생지	발생통계원표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구(區)까지 세분], 45개의 도시, 기타 도시[52개 도시 이외의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52개 도시로 분류하여 제시
범죄발생지역	전국 17개 시·도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를 기준으로 제시. 검찰청의 지휘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행정구역에 일치하도록 조정함. 규정상 실제 사건이 발생한 발생지 관할관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범죄발생지와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범죄발생지역 통계는 검찰 ‘지휘관할’ 구역의 통계와 상이함
범죄자 연령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범행 당시의 연령을 만 나이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입력된 경우 및 이상치가 많아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 연령을 정비함. 특히 촉법소년은 소년범죄자 처리절차 상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으나, 일부 촉법소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2015년부터는 14세 미만으로 입력되거나 연령 입력이 안 된 피의자동계원표의 경우 피의자별 검토를 통해서 입력상의 오류를 교정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14세 미만 피의자와 미상 통계가 상당히 적으므로 연도별 비교 시에는 주의를 요함
범행 후 은신처	피의자가 범행 후 여러 곳을 뛰쳐 다니며 은신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은신하였던 곳

용어해설

범행도구	범행도구가 여러개인 경우 그 범죄행위의 주된 것 하나만 입력
보호처분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횟수
사건처리기간	경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검찰송치일까지의 기간. 다만, 검찰 직수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에 경찰은 수사지휘 수리일부터 검찰 송치일까지의 기간을, 경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사건처분일까지의 기간에서 경찰 처리기간을 공제한 기간임. 다만 2014년 이전 『범죄분석』에서는 경찰처리기간과 검찰처리기간을 합한 총 처리기간에 대한 사건 합계를 제시하였으나, 이 수치가 한 해 동안 처리한 총 사건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생활정도	피의자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 및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한 정도
소년범죄자	「소년법」(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에 따라 19세 미만(10세 ~ 18세)의 범죄자를 의미
소년범죄자 처분결과	소년범죄자는 소년과 소녀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처분결과를 제시. 따라서 전체 소년범죄자의 처분결과는 각각을 합하여 사용해야함. 2014년 이전 통계와 연도별 추이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외국인범죄자 국적	외국 국적의 범죄자 중 범죄자 수가 많이 분포된 상위 10개국 및 기타로 분류
장물 처분방법	장물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처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물에 대한 처분방법



2018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재범

본 건 직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의미임.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재범기간

전회 처분 내용과 관련시켜 계산된 기간으로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재범행위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재범종류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으로 구분하여 제시. 동종재범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죄명이 같은 경우’,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종재범은 동종재범 이외인 모든 경우를 포함함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중복 피해(회수)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회수)품목 및 피해(회수)금액(단위 : 십만 원)을 합산하여 제시함

전과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별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

전회처분 내용

본 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 즉 범행 당시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분의 내용이나 그 집행상황. 따라서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회처분이 없는 범죄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됨.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집행종료에 포함함

용어해설

정신장애범죄자 범행 당시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意思)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변태성욕자 등)]가 있는 범죄자

처분결과 자연인인 피의자(법인은 별도 제시)에 대한 검찰의 종국처분결과를 의미. 2017년 한 해 동안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2018.7.31.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여 제시

피해자 성별 및 연령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작성됨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주된 피해자와의 관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범죄자를 기혼자, 미혼자, 미상으로 구분한 후, 다시 기혼자는 혼인관계별로,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유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동거인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마친 후 독신인 경우, 사별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독신인 경우를 의미

